

논문투고규정

제 정 2008. 09. 01.
일부개정 2015. 02. 02.
일부개정 2019. 01. 30.
일부개정 2021. 01. 27.

제 1 조(투고자격) 투고자는 법학전문대학원·대학·전문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전임교수, 박사학위 소지자, 박사과정 수료자, 법률분야 종사자, 법학 또는 환경 분야 대학원생, 기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
제 2 조(논문의 내용) 투고할 논문은 환경법 또는 환경정책 분야의 논문으로서 다른 학회지나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, 원고의 체제와 분량은 본 규정에 따라야 한다.

제 3 조(투고요령) ① 투고자는 논문투고 안내 공지에서 정한 원고마감기한까지 한국연구재단 온라인논문투고/심사시스템(<http://cls.jams.or.kr>)에 회원가입 후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. 원고 제출시, 논문투고 신청서, 연구윤리 서약서,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, 투고일은 해당 논문이 온라인논문투고/심사시스템(<http://cls.jams.or.kr>)에 투고된 날짜로 한다.

③ (삭제)

제 4 조(원고분량) ① 원고의 본문은 A4용지 15매 내외로 하되 도표, 사진, 참고문헌 등을 포함한 전체 원고분량은 A4용지 20매 이내로 하여야 한다.

② 국문 및 외국어초록은 논문의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, 분량은 원고지 5~6매로 작성하여야 한다.

제 5 조(원고작성방법) ① 원고는 논문제목, 필자명, 소속기관, 국문초록, 논문차례, 본문, 참고문헌, 외국어초록, 주제어 순으로 하며, “[붙임] 투고문작성예시”를 참고하여 작성한다.

② 논문목차의 단위표기는 I., 1., (1), 1), (가) 순으로 하며, 제목 위와 아래의 한행씩을 띠어 준다.

③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(First Author)와 공동저자(Corresponding Author)를 구분하고 주저자, 공동저자의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.

④ 국문논문은 영문 또는 독문 등의 외국어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, 외국어 초록의 논문 제목·필자명·소속기관 및 직책은 해당외국어로 표기하여야 한다. 단, 해당외국어가 영문이 아닌 경우 논문제목·필자명은 영문(English)으로 병기한다.

⑤ 외국어논문은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, 논문제목·필자명·소속기관 및 직책을 국문(Korean)으로 표기해야 한다.

⑥ 주제어는 5개 이상 지정하여 국문과 외국어로 각각 표기하여야 한다.

⑦ 인용문헌은 다음의 방식으로 각주로 처리하여야 한다.

가. 국내문헌의 경우

- 국내 단행본 : 저자, 『단행본의 제목』, 출판사, 출판년도, 34면(또는 쪽).
- 국문 논문 : 필자, “논문명”, 『간행물 명칭』, 출판사, 발행연월, 23면(또는 쪽).
- 편집서 : 필자, “해당논문명”, 편집자명, 『편집서 명칭』, 출판사, 출판년도, 23면(또는 쪽).
- 앞에서 인용된 문헌을 재인용하고자 할 때에는, 홍길동, 앞의 책(전게서) 또는 앞의 논문(전게논문), 34면(또는 쪽).
- 앞에서 같은 저자의 여러 권의 논문 또는 저서를 인용하였을 경우, 홍길동, “논문명” 또는 『단행본 제목』, 58면(또는 쪽).
- 판례의 인용 : 선고법원 선고일, 판결 또는 결정, 사건번호의 순으로 표기한다(예 대법원 1996.12.5. 선고 94누15783 판결 또는 대판 1996.12.5. 94누15783).

나. 일본 문헌

- 일본 문헌의 경우도 국내문헌의 경우와 동일하게 인용하며, 일본의 年號(昭和, 平成 등)는 모두 西紀로 고쳐야 한다.

다. 구미 문헌

- 단행본: 저자, 책명(이탤릭체), 출판사, 출판년도, 페이지
- 논문: 필자, “논문명”, 간행물의 명칭(이탤릭체), 권수, 호수, 출판사, 발행연월, 페이지
- 편집서 : 필자, “해당논문명”, 편집자명, 편집서 명칭(이탤릭체), 출판사, 출판년도, 페이지
- 구미 판례의 인용은 인용대상 국가의 일반적 용례에 따른다.

⑧ 참고문헌은 국내문헌, 외국문헌의 순으로 배치하고 국내문헌의 경우 저자명 가나다순으로, 영문문헌은 알파벳순으로 기재하며 다음의 방식에 따른다.

가. 국내문헌의 경우

- 단행본 : 저자, 『단행본 제목』, 출판사, 출판년도
- 논문 : 필자, “논문명”, 『간행물의 명칭』, 제 권, 제 호, 출판사, 발행연월
- 편집서 : 필자, “해당논문명”, 편집자명, 『편집서 명칭』, 출판사, 출판년도

나. 외국문헌의 경우

- 단행본 : 저자, 책명(이탤릭체), 출판사, 출판년도
- 논문 : 필자, “논문명”, 간행물의 명칭(이탤릭체), 권수, 호수, 출판사, 발행연월
- 편집서 : 필자, “해당논문명”, 편집자명, 편집서 명칭(이탤릭체), 출판사, 출판년도

제 6 조(게재료) ①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투고자는 2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며, 게재된 논문이 200자 원고지로 150매를 초과할 경우 투고자는 다음 표에 따른 추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. 이때 투고된 논문의 분량은 목차와 참고문헌 및 초록을 제외한 본문(각주 포함)을 기준으로 하며,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“호글”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“파일 → 문서정보 → 문서분량”에 따라 확정한다.

I. 큰제목

본문을 작성하여 보는 중입니다.}}

1. 작은제목

본문을 작성하여 보는 중입니다.

(1) 제목

본문을 작성하여 보는 중입니다.

1) 제목

본문을 작성하여 보는 중입니다.

(a) 제목

본문을 작성하여 보는 중입니다.

① 제목

본문을 작성하여 보는 중입니다.

1) 가. 국내문헌의 경우

- 국내 단행본 : 저자, 『단행본의 제목』, 출판사, 출판년도, 34면(또는 쪽).
- 국문 논문 : 필자, “논문명”, 『간행물의 명칭』, 출판사, 발행연월, 23면(또는 쪽).
- 편집서 : 필자, “해당논문명”, 편집자명, 『편집서 명칭』, 출판사, 출판년도, 23면(또는 쪽).
- 앞에서 인용된 문헌을 재인용하고자 할 때에는, 용질중, 앞의 책(간접서) 또는 앞의 논문(간접논문), 34면(또는 쪽).
- 앞에서 같은 저자의 여러 권의 논문 또는 저서를 인용하였을 경우, 용질중, “논문명” 또는 『단행본 제목』, 58면(또는 쪽).
- 판례의 인용 : 선고법원 선고일, 판결 또는 결정, 사건번호의 순으로 표기한다(㉠ 대법원 1996.12.5. 선고 94누15783 판결 또는 대판 1996.12.5. 94누15783).

나. 일본 문헌

- 일본 문헌의 경우도 국내문헌의 경우와 동일하게 인용하며, 일본의 年號(昭和, 平成 등)는 모두 西紀로 고쳐야 한다.

다. 구미 문헌

- 단행본: 저자, 『책명(이탤릭체)』, 출판사, 출판년도, 페이지
- 논문: 필자, “논문명”, 『간행물의 명칭(이탤릭체)』, 권수, 호수, 출판사, 발행연월, 페이지
- 편집서 : 필자, “해당논문명”, 편집자명, 『편집서 명칭(이탤릭체)』, 출판사, 출판년도, 페이지
- 구미 판례의 인용은 인용대상 국가의 일반적 용례에 따른다.

참고문헌

가. 국내문헌의 경우

- 단행본 : 저자, 『단행본 제목』, 출판사, 출판년도
- 논문 : 필자, “논문명”, 『간행물의 명칭』, 제 권 제 호, 출판사, 발행연월
- 편집서 : 필자, “해당논문명”, 편집자명, 『편집서 명칭』, 출판사, 출판년도

나. 외국문헌의 경우

- 단행본 : 저자, 『책명(이탤릭체)』, 출판사, 출판년도
- 논문 : 필자, “논문명”, 『간행물의 명칭(이탤릭체)』, 권수, 호수, 출판사, 발행연월
- 편집서 : 필자, “해당논문명”, 편집자명, 『편집서 명칭(이탤릭체)』, 출판사, 출판년도

참고문헌 예

참고문헌
[국내문헌]
박규성·함태성, 『환경법』, 제6판, 박영사, 2013
정남순·고수윤, “환경소송에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고찰”, 『환경법과정책』, 제13권,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, 2014
허성욱, “기후변화대응규제법제의 설계와 사회적 합의를 논쟁”, 조홍식·이재협·허성욱(지음), 『기후변화와 법의지배』, 박영사, 2010
[외국문헌]
James Salzman and Barton H. Thompson, Jr., <i>Environmental Law and Policy</i> , Third Edition, Foundation Press, 2010
Myung-Rae Cho, “The politics of urban nature restoration”, <i>Inter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Review</i> , Vol.32, No.2, Liverpool University, 2010

<Abstract>

외국어 제목
(영문 제목(English) 병기)

외국어 이름*
(영문 이름(English) 병기)

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은 중요한 심사대상이므로 완성도 있게 작성하여 주세요
The court didn't recognize remedies for the damage on the grounds.....

Key words: 외국어 주제어를 5개 작성하여 주세요

* 외국어 소속과 직위